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38
----------	------

2014년 3월 4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2월 21일, 김생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생환)

- 2013년 6월 3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시설 보육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개정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13. 12. 5.)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의 명칭 및 기능 변경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13년 6월 4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기능도 기존의 시설보육지원 위주에서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기능(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등)이 추가 되었음.
- 당시 법 개정취지는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집 정보제공,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및 장난감 대여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임.

-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으로 하여금 조례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상기 법개정 이전부터,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보육시설지원 위주의 업무에 치중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재가아동지원을 위한 영유아플라자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러한 사례는 상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선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처럼 우리시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끄는 사례는 향후에도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모범적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됨.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비교〉

구 분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설립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시 보육조례 제10조 행정1부시장 방침(2007.7.11.)
설립현황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25개소(자치구별 1개소)
주요기능	육아정보제공, 어린이집 지원, 부모지원, 육아상담 등	가정에 키우는 아동 및 부모 대상 육아지원종합 서비스 제공(육아카페, 체험학습, 육아상담, 교육기능)
운영방식	민간위탁 23개, 도시관리공단 1개(성북) 직영 1개소(강동)	민간위탁 23개, 도시관리공단 1개(성북) 직영 1개소(강동)

<별첨자료>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연번	센터명	주소	위탁체	최초개소일	종사자(명)	14년예산(천원)		
						계	시비	구비
1	서울시	중구서소문동 5-1	(학)숙명학원	1999.01.	11	562,649	562,649 (국60,000)	183,107
2	종로구	종로구 통일로 18길 64 (무악동)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09.11.23	10	275,044	91,937	183,107
3	중 구	중구 다산로 32길 5 (신당동 292-60)	동국대학교	2011.12.01	15	509,210	91,937	417,273
4	용산구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이태원동)	학교법인 숙명학원 (숙명여자대학교)	2012.01.16	3	171,874	91,937	79,937
5	성동구	성동구 아차산로 107. 3층(성수동2가)	학교법인 한양학원	2005.12.22	10	422,886	91,937	330,949
6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 (군자동)	사단법인 나눔복지재단	2009.12.29	9	303,839	91,937	211,902
7	동대문	동대문구 황물로 62 (답십리동)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2009.11.17	15	483,874	91,937	391,937
8	중랑구	중랑구 중랑역로 3길 28 (중화동)	서일대학교	2010.12.01	6	244,320	91,937	152,383
9	성북구	성북구 오패산로 10길 19 (하월곡동 222-6)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009.07.01	35	298,813	91,937	206,876
10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 (수유동 410-293)	한양대학교	2012.06.13	13	546,393	91,937	454,456
11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방학동 306-10)	학교법인 덕성학원 (덕성여자대학교)	2006.03.29	15	636,340	91,937	544,403
12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4층 (상계동)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2008.07.15	16	493,874	91,937	401,937
13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 (구산동)	명지대학교	2010.07.22	7	364,249	91,937	272,312
14	서대문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권선소 별관 우리들 1층 (홍은동 425-3번지)	연세대학교	2011.03.01	6	321,993	91,937	230,056
15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 (상암동 1686)	이화여자대학교	2010.02.22	18	855,915	91,937	763,978
16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신정동)	그리스도대학교	2011.03.02	5	208,953	91,937	117,016
17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 2길 50 (내발산동)	그리스도대학교	2009.12.29	6	312,296	91,937	220,359
18	구로구	구로구 가미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 (구로동)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	2010.09.01	4	206,874	91,937	114,937
19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시흥동)	그리스도대학교	2007.09.01	9	291,317	91,937	199,380
20	영등포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 (신길4동 232-20)	중앙대학교	2009.02.25	4	233,801	91,937	141,864
21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대방동 385-2 3층)	동작복지재단	2006.12.29	12	588,453	91,937	496,516
22	관악구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 (봉천동)	학교법인 일송학원 한림대학교	1999.08.02	8	392,282	91,937	300,345
23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 (서초동)	이화여자대학교	2008.04.11	14	690,343	91,937	598,406
24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 72길 7 (대치동 961-17)	학교법인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2006.09.01	25	1,121,608	91,937	1,029,671
25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오금동 50번지)	(사)월드유스비전	2010.09.30	9	191,349	91,937	99,412
26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6길 16 (성내동 556-1)	강동구청 직영	2007.05.02	50	944,168	91,937	852,23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생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38
----------	------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21일

발 의 자 : 김생환 의원
찬 성 자 : 김기옥 · 고만규 · 김상현 · 강태
회
정세환 · 임형균 · 이순자 · 김정
태 오승록 · 김기만 의원 (10명)

1. 제안이유

2013년 6월 3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고, 시설 보육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한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 ·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함(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 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임시보육 서비스,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7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같은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u>보육정보센터</u>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7.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3장 보육정보센터 등 (개정 2008.11.13.)</p>	<p>제5조(기능)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현행과 같음) 4. <u>육아종합지원센터</u>----- 5.~8.(현행과 같음) <p>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p>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u>(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2009.11.11)</p>	<p>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 ----- <u>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u>(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한다)-----</p>
<p>제11조(설치기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05.09.30, 2008.11.13)</p>	<p>제11조(설치기준) ① <u>육아종합지원센터</u>----- ----- -----</p>
<p>제12조(기능) ① <u>보육정보센터</u>는 영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u>제7호까지</u>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1.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육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개정 2005.09.30, 2008.11.13) 2. 시민의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어린이집 이용실태 조사 (개정 2005.09.30, 2008.11.13, 2012.5.22) 3.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5.09.30, 2008.11.13) 	<p>제12조(기능) ① <u>육아종합지원센터</u>----- -----<u>제9호까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현행과 같음)
<p>제13조(구성)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p>	<p>제13조(구성) ① -----</p>

현행	개정안
<p>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보육정보센터</u>에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직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8.11.13, 2009.11.11, 2012.5.22)</p>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보육정보센터</u>의 운영을 영 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8.11.13, 2012.5.22)</p> <p>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험시설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8.11.13)</p> <p>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u>보육정보센터</u> 또는 체험시설(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등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등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11.13)</p> <p>⑤ 센터등의 경우 민간인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3)</p> <p>⑥ 그 밖에 센터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13)</p>	<p>----- <u>육아종합지원센터</u> -----</p> <p>-----</p> <p>-----</p> <p>② ----- <u>육아종합지원센터</u> -----</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p> <p>④ ----- <u>육아종합지원센터</u> -----</p> <p>-----</p> <p>-----</p> <p>-----</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8.11.13, 2009.1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증·개축 보수비(개정 2005.09.30, 2008.11.13, 2012.5.22) 2. 보육교사 인건비(개정 2005.09.30) 3. 교재·교구비(개정 2005.09.30) 4. <u>보육정보센터</u> 설치·운영비 (개정 2005.09.30., 2008.11.13)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용(개정 2005.09.30) 6. 시간연장형 보육, 방과 후 보육,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족의 아동 등 취약보육 운영비용(개정 2005.09.30, 2009.11.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 	<p>제18조(비용의 보조) ① -----</p> <p>-----</p> <p>-----</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p> <p>4. <u>육아종합지원센터</u>-----</p> <p>5. ~8.(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개정 2005.09.30, 2008.11.13)</p> <p>8.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5.09.30, 2008.11.13)</p>	